

의안번호	제 41 호
의결년월일	1997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7. 12 . / .

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3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7.12.1.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내무부로부터 한시지구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한시기한의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부칙 제2항(유효기간)을 개정코자 함.

2. 법적근거

-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한시지구·정원연장증인서
[도행정 12200-866('97.11.20)호]

3. 주요골자

- 현재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한시기한을 1998년말까지 1년 연장함.

4. 개정규칙(안)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제2항중 “1997”을 “199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